

의안번호	2220099
의 퇴 인	이진숙의원
회 답 일	2026.8.25.
추계번호	26D3655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조의2(중대선거관리사고로 인한 선거권 행사 제한에 대한 배상책임)	국가는 「공직선거법」 제272조의4제1항에 따른 중대선거관리사고로 인하여 선거인이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거나 선거권 행사에 현저한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2조의2(중대선거관리사고로 인한 선거권 행사 제한에 대한 배상책임)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중대선거관리사고로 인한 선거권 행사 제한에 대한 국가배상(안 제2조의2 신설)

- 개정안에 따라 중대선거관리사고로 인하여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거나 선거권 행사에 현저한 제한을 받은 경우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교통비, 일실수입(逸失收入) 등 경제적 손실에 대한 배상금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국가가 배상하도록 하는 경우 국가배상금, 패소에 따른 상대방 소송비용 부담금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 최근 5년간 국가배상금 지급현황을 보면, 법원판결금, 배상심의회 결정금, 패소부담금을 포함하여 총 5,775건에 1조 145억 7,200만원의 배상금이 지급되었음

[표 1] 국가배상금 지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법원 판결금		배상심의회 결정금		패소 부담금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1	275	215,908	60	83	430	7,751	765	223,742
2022	293	140,810	57	87	532	7,471	882	148,368
2023	316	93,217	75	170	376	6,011	767	99,398
2024	444	96,285	81	246	754	10,169	1,279	106,700
2025	1,274	426,973	39	68	769	9,323	2,082	436,364
합계	2,602	973,193	312	654	2,861	40,725	5,775	1,014,572

자료: 법무부 「2025 법무연감」

-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중대선거관리사고로 인한 선거권 행사 제한 건수 및 그 중 국가배상을 청구하게 될 건수, 위자료 산정에 대한 기준, 소송 가액, 승소 및 패소 가능성, 패소에 따른 상대방 소송비용 부담금 등에 대한 예측이 필요하나 이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가 곤란함
- 따라서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의 변화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박은비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은비	02-6788-4831	ebpark@assembly.go.kr